# 최 신 판 례 예 규

#### Marketing Tax consulting

제안공모방식으로 토지·건물 일괄 매각 후,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"이"일수도 있음

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·건물을 일 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"0"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, 건물 노후화 상 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 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서면법규부가-6959, 2022.04.06

# ▮질 의

-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보유 부동산(사택 및 부지)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
- 1. 철거가 전제된 사택건물가액을 "0"으로 볼 수 있는 지
- 2. 개발수익금이 토지가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지

#### ▮회 신

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·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입찰자들의 매수 의향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계약(협약)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(토지,건물,개발수익금)을 받는 경우로서

1. 매수인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4조제2항제2 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 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"0"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2.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4호에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 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

사전법규법인-355, 2022.03.31

# ▮질 의

- A법인은 승강기 설치 및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임 질의
- 승강기 설치 및 수리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는지 여부

#### ▮회 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, 승강기 설치 및 수리・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・장비 설치 공사업(분류코드: 42202)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,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
도시정비법에 따라 ◎◎도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 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
사전법규부가-831, 2022.08.25

# ▮질 의

- 도시정비법에 따라 ◎◎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 전 토지 대신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이 재화 의 공급인지 여부
- 2. 공사의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 상이 누구인지

### ▮회 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주 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◎◎도시공 사(이하 "공사")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로서

- 1.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(분양)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- 2.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

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 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·납부 의무가 없음

사전법규법인-168, 2022.04.13

#### ▮질 의

- A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
 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
- A법인은 2021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총액이 5,000 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에 따라 2024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음 질의
-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법인 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

#### ▮회 신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·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
2023 · 03 · 22 www.eAnSe.com 13